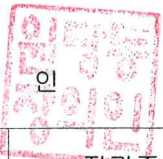


직 권 조 치 결 과 공 고 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
공고합니다.

2026년 08월 03일

원당동장 인 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박 *호	박 *호 2003-07-10	인천광역시 검단구 원당대로819번길 (원당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6-08-03